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신림공영차고지(저류조 포함)조성공사[장기1차]]

- 점검일시 : 2021.05.26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달영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분전반이 체수가 되는 공간에 있는 곳은 가설 전선 연결 및 분전반 작업시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이동 등 대책 검토 요함.
 - 체수가 된 곳에서의 용접 작업 및 용접기가 놓여 있는 경우 등은 감전재해 위험이 있으니 조치 요함.
 - 분전반의 충전부 및 용접기 충전부는 감전되지 않도록 보호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, 공통-21(용접작업 및 용접기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자재의 운반이동중 낙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에 근로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교육관리 하고, 유도로프를 더 길게하여 작업 관리하기 바람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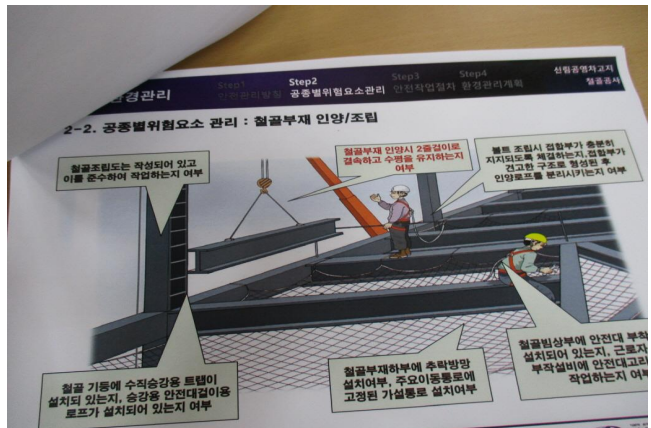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유출입구 구간 횡단보도에 휨스가 2단만 투명하게 되어 있으나, 소형차량이 보이지 않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1단도 투명하게 하는 것 검토 요함.
- 보행도우미가 휨스옆 그늘에서 서 있으니, 종일 일사광선에 노출되어야 하고 하절기가 다가오므로 그늘막에서 신호가 가능하도록 조치 요함.
- 보행도우미의 위치가 횡단보도와 공사차량출입구를 왕래하므로 시기 및 유도내용을 명확하게 교육관리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



○ 시공계획 및 승인(토목부)

- 저류조에 철골작업을 진행중이며,
- 철골작업시공계획서에 구체적인 양중작업(기둥 및 보 철골이 상이하나 이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
- 부재의 체결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누락됨.
- 기둥을 세울 때 철근의 상부단부에서 1회 조정하고, 기둥 상부에서 2차 조정하면서 발생하



는 여러 상황이 누락되어 있으니 시공계획을 위험요인을 판단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 요함.

- 추후 도장작업을 실시할 때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, 제38조(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계단의 바로 하부에 철근작업장이 있으니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유출입부 집수정 철거하는 곳이 개구부가 되어 있으니 관리 요함.

- 기존 상수관의 절단상태가 불량하여 자상 및 찢림재해가 가능하고, 컨센트가 바로 위에 있어 추락재해 등의 위험이 있으니 관리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SRC 구조물로 철골과 철근이 대칭이 되지 않고 있으며
- 추후 위치조정 및 철골 하부 청소 등을 면밀하게 관리 요함.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가스관의 외기온도 관리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
